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no pers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contains a valid OMB control number.

출원 자료를 이용한 실용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 선언서 (37 CFR 1.76)
DECLARATION (37 CFR 1.63) FOR UTILITY OR DESIGN APPLICATION US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37 CFR 1.76)

발명의 명칭
Title of
Invention

아래에 기명된 발명자로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As the below named inventor, I hereby declare that:

동 선언서

제출처: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첨부된 출원, 또는
The attached application, or미국 출원 또는 PCT 국제 출원 번호 _____ 및 출원 일자 _____
United States application or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_____ filed on _____.

상기 기재된 출원은 본인이 작성하였거나, 본인의 허락하에 본인 작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The above-identified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본인은 본인이 단독 또는 공동 발명자와 함께 출원서에 주장된 발명사항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본인은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 동 선언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18 U.S.C. 1001에 의거, 벌금형 또는 (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주의:**WARNING:**

청원인/출원인은 특허 출원 문서에 신분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번호, 은행계좌 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 (지불 용도로 제출되는 수표 또는 신용카드 승인 양식 PTO-2038 제외)와 같은 개인정보는 미국 특허청이 청원 또는 출원을 지원할 때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미국 특허청에 제출되는 문서에 포함되는 경우, 청원인/출원인은 미국 특허청에 이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서의 개인정보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공개 (37 CFR 1.213(a)) 에 따라 출원서에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허권 발급 후에는 일반인이 특허 출원에 관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청원인/출원인에게 알려 드립니다. 더욱이 공개된 출원 또는 발급된 특허권에서 참조되는 경우에는 포기한 출원의 기록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7 CFR 1.14 참조). 지불 용도로 제출되는 수표 및 신용카드 승인 양식 PTO-2038 은 출원 파일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Petitioner/applicant is cautioned to avoid submitting personal information in documents filed in a patent application that may contribute to identity theft.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bank account numbers, or credit card numbers (other than a check or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 PTO-2038 submitted for payment purposes) is never required by the USPTO to support a petition or an application. If this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documents submitted to the USPTO, petitioners/applicants should consider redacting such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documents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SPTO. Petitioner/applicant is advised that the record of a patent application is available to the public after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unless a non-publication request in compliance with 37 CFR 1.213(a) is made in the application) or issuance of a patent. Furthermore, the record from an abandoned application may also be available to the public if the application is referenced in a published application or an issued patent (see 37 CFR 1.14). Checks and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s PTO-2038 submitted for payment purposes are not retained in the application file and therefore are not publicly available.

발명자의 법적 성명

LEGAL NAME OF INVENTOR

발명자: _____

Inventor: _____

일자 (선택사항): _____

Date (Optional): _____

서명: _____

Signature: _____

주의: 전체 발명에 대한 열거사항을 포함한 출원 자료서 (PTO/AIA/14 또는 상응하는 문서)를 이 양식에 반드시 첨부하거나 기존에 이미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명자가 복수일 경우 PTO/AIA/01 양식을 추가 발명자 1인당 하나씩 작성하십시오.

Note: An application data sheet (PTO/AIA/14 or equivalent), including naming the entire inventive entity, must accompany this form or must have been previously filed. Use an additional PTO/AIA/01 form for each additional invent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required by 35 U.S.C. 115 and 37 CFR 1.63. The information is required to obtain or retain a benefit by the public which is to file (and by the USPTO to process) an application. Confidentiality is governed by 35 U.S.C. 122 and 37 CFR 1.11 and 1.14. This collection is estimated to take 1 minute to complete, including gathering,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the USPTO. Time will vary depending upon the individual case. Any comments on the amount of time you require to complete this form and/or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should be sent to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DO NOT SEND FEES OR COMPLETED FORMS TO THIS ADDRESS. **SEND TO:**

Commissioner for Patents,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If you need assistance in completing the form, call 1-800-PTO-9199 and select option 2.

사생활보호법 진술서

1974년 사생활보호법(P.L. 93-579)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 관계 첨부 양식의 제출과 관련하여 귀하가 일정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본 정보의 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는 35 U.S.C. 2(b)(2) 입니다; (2) 요청 정보의 제공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 (3) 미국 특허청이 본 정보를 이용하는 주 목적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한 귀하의 제출서류를 처리 및/또는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이 귀하의 제출 서류를 처리 및/또는 심사하지 못하게 되어 소송절차의 종료, 출원의 포기 또는 특허의 만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양식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의 일상적인 이용에만 이용됩니다.

1. 본 양식의 정보는 정보자유법 (5 U.S.C. 552) 및 사생활보호법 (5 U.S.C. 552a) 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취급될 것입니다.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들은 기록에 대한 공개가 정보자유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타협 협상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공개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판사 또는 행정재판소에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개인이 기록의 요지에 관하여 의회위원의 도움을 요청한 때,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기록과 관계 있는 개인과 관련된 청원서를 제출하는 의회위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정부기관의 계약자에게,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 수령자는 5 U.S.C. 552a(m) 에 의거 보정된 1974년 사생활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특허협력조약에 의거 제출된 국제 출원과 관련한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6.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국가 안보 심사 (35 U.S.C. 181) 목적 및 원자력법에 의거한 심사 (42 U.S.C. 218(c)) 를 위해 다른 연방정부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7.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미국 총무처가 44 U.S.C. 2904 및 2906에 근거하여 기록 관리 및 프로그램 개선 권고 의무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검사 기간 동안 미국 총무처 국장 또는 피지명자에게 일상적인 이용을 위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는 이러한 목적의 기록 검사 및 다른 관련 (예: 미국 총무처 또는 상무부)명령에 적용되는 미국 총무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인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35 U.S.C. 122(b) 에 의거한 출원 공고 또는 35 U.S.C. 151 에 의거한 특허권 발급 후 일상적인 이용을 위한 경우에 일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 포기된 출원서에 기록이 제출되었거나 소송절차가 종결되었고 공람 중인 공개된 출원 또는 발급된 특허에 의해 참조되는 경우에는 37 CFR 1.14 의 제한에 의거 일상적인 이용을 위한 경우에 일반에 기록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9. 본 기록 시스템상의 기록은 미국 특허청이 법 또는 규정 위반 혹은 위반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일상적인 이용의 일환으로,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집행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